

노인부부가계를 위한 노후 월평균생계비 산정\*  
- 최저생계비, 표준생계비, 유락생계비의 산정 -  
The Estimate of the Living Cost for the Elderly Couple\*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이 선 형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 수 이 연 속

Kukje Theology Graduate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Full-time Lecturer : Lee, Sun-Hyung  
Korea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Professor : Lee, Yon-Su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stimate living cost for the elderly couple living in a city in Korea. Living cost means expenditure per month for elderly couple. It was assumed that the elderly couple will need different living cost according to their circumstances. The circumstances are health status, retirement status, and the level of living they want.

The subjects were the elderly couple households over the age 65 of household head. Total number of subject was 1,649 households. Used data was Annual Report surveyed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Analysis of data was done through frequency, percentage, means, median using SA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본 논문은 2001년 2월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실은 것임.  
본 논문은 1999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신진연구인력 연구장려금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Their standard living cost was 844,980 won by pure relative standard line and 842,300 won by quasi relative standard lines. And minimum living cost was 713,400 won by the former, by the latter was 557,600 won ( $\frac{2}{3}$  of median). And abundant living cost was 1,068,020 won by the former, by the latter 1,263,450 won. The living cost of elderly households was about 81~83%, comparing with non-elderly households. Among the item of expenditure, the proportion of housing and medical care cost was larger than any other items.

**주제어(Key Words):** 노후 월평균 생계비(living cost for the elderly), 최저생계비(minimum living cost), 표준생계비(standard living cost), 유락생계비(abundant living cost)

## I. 서론

우리 나라 부모부양 규범에 의하면 노인이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에 따라 자식에 대한 투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곧 노후보장의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자식에 대한 투자는 노후보장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노인단독가계의 급속한 증가를 야기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a).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도입된 시기가 짧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아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었던 인구층은 특정 직업군의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현재 대다수의 노인은 아직도 개별가정, 즉 자녀의 부양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공적연금에 의해 노후가 보장되는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천에 의한 노후소득은 전체 필요소득의 50~70% 정도이고, 필요 소득의 부족분은 자산소득이나 근로소득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Crown, Longino & Cutler, 1993; Hirschler, 1993; Schwenk, 1994; Radner, 1995). 이에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대다수의 노인들이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게 되더라도, 이 연금으로 필요한 소득액을 100% 충당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노후에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후에 필요한 소득이

얼마이며, 이를 위해 얼마의 저축액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노후소득 및 저축액은 노후 생계비를 기초로 해서 산출되는데, 왜냐하면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후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계비 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노후 생계비 측정에 대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빈곤선 설정이나 노동자측의 임금협상을 위해 실시된 최저생계비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그 수도 적으며 산출된 최저생계비의 편차가 몹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노동자측의 연구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99)의 경우 측정된 최저생계비가 당해 연도 평균소득 대비 115.9%였던 데에 반해, 같은 해 정부측의 연구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의 경우 43.0%에 불과해 측정된 생계비의 격차가 72.9%에 이른다.

최저생계비에 관한 선행 연구결과의 편차가 설사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측정된 생계비로 노후 생계비를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들이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령층은 주로 30~40대의 근로자로, 생계비 측정을 위한 기준 가계를 근로자인 남편, 전업주부인 부인과 자녀 2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가계의 경우 퇴직자가계가 많으며, 가계별 건강상태가 상이하고, 가계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정한 기준가계와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이선형·이연숙,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노인가계와 처해 있는 상황이 상이한 노인가계의 노후 생계비를 산

정함으로, 노인가계를 위해서는 노후설계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노인에 대한 국가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생계비의 개요

생계비는 하나의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단위인 가계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생계비와 관련된 연구는 17세기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생계비연구는 초기에도 지금처럼 빈곤층을 규정하고 최저임금선을 결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Monroe, 1974).

생계비는 측정방식에 따라 이론생계비나 실태생계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론생계비란 기준이 되는 가계의 생활수준을 정한 다음, 그 기준가계가 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이론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물량방식, 소비함수법, 전환점분석방식 등이 있다. 이에 반해 실태생계비란 각 가계가 현실적인 생활에서 실제로 소비한 비용을 조사하여 측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단신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근로자생계비 조사 등이 있다. 즉 "이론생계비는 '얼마가 들어야 하는가' 라면, 실태생계비는 '얼마가 들고 있는가' 를 의미한다(楠田 丘(구스타 오카), 1987)".

또한 모형이 상정하고 있는 생활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생계비가 설정될 수 있다. 楠田 丘(구스타 오카, 1987)는 피구홀수준(pauper level), 최저생존수준(minimum of subsistence level), 최저생계수준(minimum of health and decency level), 표준생계수준(normal level), 유락생계수준(health and decency level)의 크게 다섯 가지 수준으로 생계비를 분류하였으며, 여러 학자도 유사한 수준의 생계비를 분류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생계비 연구는 최초로 1969년에 전국섬유노동자조합에서 최저생계비를 추계한 이래로 1970년대 중반부터 연구가 이루어져,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이전의 연구들이 주로 최저생계비에 국한되었던 것에 비해 표준생계비, 통상적생계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 등으로 그 종류가 다양해졌다. 그러나 각 주체들의 생계비 측정 목적이 달라 정부, 노동자측, 일반연구자에 따라 연구결과 는 상당히 상이한 실정이다.

### 2. 생계비 측정방식 중 통계해석 방식

앞에서 살펴본 생계비 측정방식 중 본 연구에서는 통계해석 방식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 방식은 가계조사나 소득조사를 통해 그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등을 표준생계비로 삼거나, 전체 가계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생계비를 빈곤선 또는 최저생계비로 삼는 방식이다(허선, 1992). 이는 빈곤을 불평등의 관점에서 파악하게 되므로 상대적 빈곤 수준 파악에 유리한 방식으로, 소득분배상의 일정비율을 빈곤으로 측정하는 '순수상대빈곤(pure relative poverty)' 과 평균소득이나 중앙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를 빈곤으로 정의하는 '유사상대빈곤(quasi relative poverty)'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방식을 통해 빈곤선을 정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이러한 방식은 우선 마켓바스켓 방식이 상정할 수 없는 사회내의 상대적인 차이를 반영해 줄 수 있다는 점과 마켓바스켓 방식에서 일정기간 후에 모형을 수정해 주어야 하는 것과는 달리, 평균이나 중앙소득은 사회의 생활수준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므로 생계비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되어 모형의 수정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또한 표준가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계분석을 통해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수집되어 있는 소득이나 지출 자료를 활용하므로 측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김경자,

〈표 1〉 주요기관 및 연구자에 따른 유사상대빈곤선

주요기관 및 연구자	유사상대빈곤선
OECD	중앙 가계소득의 40, 50, 60%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 평균 가계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 가계소득의 1/2
Fuchs	중앙 가계소득의 50%
Townsend	빈곤층은 평균 가계소득의 80% 이하, 극빈층은 50% 이하
Rainwater	가계당 평균 소득의 46~58%
일본	근로자가계 평균 소비지출의 68%

출처: 김미곤(1997), 최저생계비 측정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3호, p. 10.

1997: 한국노동연구원, 1996). 통계해석 방식을 사용한 김경자(1997)의 경우 측정된 생계비를 전물량 방식에 의한 연구결과들과 비교한 결과 계속치나 가계균등화지수가 거의 차이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평균, 중앙값, 최빈값중 어떤 수치를 사용하더라도 이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지, 또한 최저생계비라면 그 중 몇 퍼센트를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마켓 바스켓 방식에서 품목의 종류, 수량 및 가격 결정에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된다면, 통계해석 방식에는 수치선정과 비율 결정에 그러한 자의성이 개입된다. 또한 그 나라의 불평등 정도에 따라 최저생계비나 빈곤에 속하는 집단이 달라지게 되고(이두호 외, 1991), 왜곡된 임금구조나 물가구조, 소비행태 등이 그대로 생계비에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노인이 빈곤상태에 있는 노인가계의 경우 필요로 하는 생계비보다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 3. 생계비의 수준 분석

노후 생계비의 최저선과 표준선의 지침을 삼기 위해 생계비 관련 연구를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다른 해에 조사된 생계비를 같은 연도에 비교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해 생계비를 조정해왔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생계비

지수가 아니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가 커져 추정치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상승은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물가에 의해서만 빈곤선을 변화시킬 경우 빈곤선을 평균생활수준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김미곤(1997)이 사용한 수준균형방식을 이용하고자 한다. 수준균형방식이란 계속된 생계비를 그해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도시가계연보에 보고된 소득과 소비지출의 비율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최저생계비를(서상목, 1979; 윤석범, 1983; 장현준, 1986; 이중희, 1987; 이보경, 1992;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국토개발연구원, 1990; 박태규, 1991; 안병근, 1991; 장원창, 198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89, 1997; 류정순, 1996; 김경자, 1997, 2000; 황재한, 19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에서 보고하는 당해연도 평균소득과 평균소비지출로 나누어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저생계비를 평균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적게는 22.4%에서 많게는 97.0%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소비지출로 나눈 비율은 332~141.1%의 범위에 이른다.

계측된 최저생계비가 객관성을 인정받기 위한 한 방법으로 주요 기관 및 국가들이 설정하고 있는 〈표 1〉의 유사상대빈곤선을 통해 비교하였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선은 World Bank의 개발도상국 기준인 평균가계소득의 1/3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Townsend의 빈곤층 기준인 평균가계소득의 80%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즉 최저생계비가 소득의 33~80% 범주에 포함될 때 그 객관성이 인정된다고 할 때,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89, 1997)과 류정순(1996)의 절대빈곤선이 이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다.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한 공식적인 상대빈곤선은 일본의 자료뿐이다. 일본은 1965년 소비지출의 50.2%선에서 점차 그 수준을 향상시켜 1984년 68% 수준에 도달하자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민의 생활수준과 보조를 맞추는 수준균형방식으로 전환하였다(김미곤, 1997). 이를 적용해 50.2%를 하한선

으로, 68%수준을 상한선으로 본다면, 박태규, 장원창, 안병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97), 류정순의 절대빈곤선, 상대빈곤선, 김경자(1997)의 최저생계비가 그 수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에 조사된 표준생계비도(장현준, 1987; 조성자, 1991; 한국노동연구원, 1996; 김경자 1997, 2000; 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8) 같은 방법으로 비교한 결과, 도시가계연보에서 보고하는 당해 연도 평균소득 대비 표준생계비는 적게는 55.3%에서 많게는 115.2%까지 이르며, 가계지출에 대한 비율도와 마찬가지로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73.0~153.8%).

표준생계비도 그 객관성을 인정받기 위한 한 방법으로 Hefferan(1987)이 사용한 비교기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그는 소비지출의 중앙값을 표준생계수준(prevaling standard)으로 보고, 이의  $\frac{2}{3}$ 수준을 상대적 빈곤 수준(lower living standard)으로,  $\frac{1}{2}$ 수준을 사회적 최저 수준(social minimum standard)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조성자(1991)와 민주노동조합총연맹(1998)은 너무 높으며, 장현준(1987)의 경우 평균소득 대비 33~80% 범위를 최저생계비로 보았던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55.3%는 너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표준생계 수준의 경우 연구된 수도, 비교기준도 적어 적정수준의 제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 4. 노인가계의 생계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계비 추정에 관한 연구에서 생계비는 주로 3가지 요인 즉, 물가, 생활수준, 가구원수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김경자, 1997; 황재한, 1997; 楠田 丘(구스타 오카), 1987). 그러나 이러한 요인 뿐 아니라 각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상이한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요소들도 생계비에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 생계비관련 연구 중 부분적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시도가 있었는데, 황재한(1997)은 조사가계에 노인의 존재유무, 학생유무,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에 따라, 그 특징별로 생계비에 차이가 나타남을 라이덴 방식으로 추정하여 증명하였다. 한

국보건사회연구원(1999)은 장애인 유무, 편모부가계 특성별로 생계비에 차이가 나타남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연령, 건강 및 직업상태에 따른 노후 생계비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고, 이러한 변수를 고려한 생계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노인가계 중 자녀와 별도의 가계를 운영하고 있는,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인 노인단독가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인 단독가계의 빈곤성향으로 인한 필요생계비의 하향을 막기 위해 2인 부부가계를 표준가계로 설정하였다. 이는 총 1,649가계로, 전체 도시가계조사 노인가계의 53%에 해당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부부가계의 노후 월평균 표준생계비는 얼마인가?

(1-1) 순수상대표준선을 사용한 노후 월평균 표준생계비는 얼마인가?

(1-2) 유사상대표준선을 사용한 노후 월평균 표준생계비는 얼마인가?

〈연구문제 2〉 노인부부가계의 특성 및 원하는 생활수준에 따라 조정된 노후 월평균생계비는 얼마인가?

(2-1) 노인부부가계가 원하는 생활수준에 따라 조정된 노후 월평균 최저생계비와 유락생계비는 얼마인가?

(2-2) 노인부부가계의 건강상태 및 취업상태에 따라 조정된 노후 월평균 표준생계비는 얼마인가?

### 3. 용의 정의 및 추정방법

본연구의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 유락생계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최저생계비는 노인부부가게 중 일정비를 이하의 계층을 기준으로, 이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후동안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월평균생계비로 정의한다. 표준생계비는 이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약간의 여유가 있는 노후 월평균생계비이며, 유락생계비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노후 월평균생계비로 정의한다.

표준생계비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추정된다(〈표 2〉 참조). 하나는 소비지출 분포상의 40~60%인 집단을 표준으로 보고 이 집단의 가구원수별, 비목별 중앙값의 합을 표준생계비로 보는 방법으로, '순수상대표준선'에 의한 표준생계비라 지칭한다. 다른 하나는 노인부부가게를 전체 집단으로 놓고 이 집단의 비목별 중앙값의 합을 표준생계비로 보는 방법으로, 이를 '유사상대표준선'에 의한 표준생계비라 지칭한다. 표준선에서는 빈곤선과는 달리 두 개념이 유사한 측정치를 보일 수 있으나 측정방법의 구분을 위해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중앙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소비지출의 분포가 log-normal 분포로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평균은 생계비를 상향

평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준생계비 측정시 총 가계지출의 중앙값을 표준생계비로 하지 않고 비목별 중앙값을 구하고 이의 합을 산정하는 이유는, 비목별 중앙값의 합을 살펴볼 경우 생계수준을 구성하고 있는 품목과 지출비중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물량방식으로 측정된 결과와도 비교가 가능하며, 보다 정확히 생계비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계비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한 순수상대표준선은 소비지출 40~60%인 집단의 비목별 중앙값을 중심으로 하위 27.5~37.5%인 집단을 최저생계비로 하였다. 그리고 표준생계비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차이만큼을 표준생계비에 더한 값, 즉 소비지출 순위 상위 27.5~37.5%인 집단의 비목별 중앙값을 유락생계비로 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선행연구에서 평균소비지출에 대한 최저생계비의 비율이 55~75%에 집중되기 때문인데, 중앙값의 55~75%인 분포가 27.5~37.5%이다. 이는 빈곤연구에서 저소득층을 30% 부근으로 설정하는 것과도 일치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유사상대표준선을 적용한 생계비의 수준은 Hefferan(1987)의 기준을 적용한다. 즉 최저생계비는 비목별 지출 중앙값의  $\frac{2}{3}$ 를 '상대빈곤선(lower living standard)'으로,  $\frac{1}{2}$ 을 '사회적 최저선(social minimum standard)'으로 구분한다. 유락생계비는 비목별 지출 중앙값의 1.5배인 선이다.

〈표 2〉 생계비의 추정방법\*

생계비수준	추정 방법	
표준생계비	제1안	소비지출 분포상의 40~60%인 집단을 표준집단으로 보고, 이 집단의 비목별 중앙값의 합
	제2안	노인부부가게를 전체 집단으로 놓고, 이 집단의 비목별 중앙값의 합
최저생계비	제1안	표준집단을 중심으로 소비지출 순위 하위 27.5~37.5%인 집단의 비목별 중앙값의 합
	제2안	상대빈곤선 : 제 2안에 의한 표준생계비의 $\frac{2}{3}$ 가 되는 선 사회적 최저선 : 제 2안에 의한 표준생계비의 $\frac{1}{2}$ 이 되는 선
유락생계비	제1안	표준집단을 중심으로 소비지출 순위 상위 27.5~37.5%인 집단의 비목별 중앙값의 합
	제2안	제 2안에 의한 표준생계비의 1.5배인 선

\* 제1안 : 순수상대표준선 적용, 제2안 : 유사상대표준선 적용

4. 사용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통계청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도시가계조사의 99년 원자료(原資料)이다. 이 자료는 전국 72개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계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가계를 층화 및 확률비례 추출하여 조사하며, 1999년 월평균 조사가계수는 5,246가계이다. 조사방법의 경우 비목별 지출은 가계부 기장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계소득 및 인구사회적 특성은 면접조사에 의한다.

도시가계조사에서 제공하는 비목 중 일부 비목의 세부항목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변경하였다<sup>1)</sup>. 또한 표집된 모든 조사대상가계가 1월에서 12월 모든 기간에 대해 조사받는 것이 아니므로, 표본가계의 연간지출자료 사용이나 응답 월에 대한 평균치 사용이 불가능하여 본 연구에서는 1월~12월 전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 과 <연구문제 2>의 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모든 자료의 분석은 SA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V. 연구결과 및 분석

1. 노인부부가계의 월평균 표준생계비

1) 월평균 표준생계비의 산정

순수상대표준선에 의한 표준생계비는 844,980원이며, 유사상대표준선에 의한 표준생계비는 평균값을 사용한 경우 월 1,250,471원으로, 중앙값을 사용한 경우 842,300원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중앙값을 사용한 두 표준생계비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평균값에 의해 계산된 유사상대표준선 I은 가계지출 분포상의 66.9%에 해당되어 중앙값보다 16.9% 높은 값을 나타낸다. 이에 앞으로 표준생계비는 중앙값을 통한 유사상대표준선과 순수상대표준선에 의한 결과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비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지출비중을 차지하는

- 1) 주거비에 귀속임대료 포함. 교육비에서 교양 오락비의 성인을 위한 교육적 강습료 추가. 교양 오락비에는 성인을 위한 교육적 강습료 제외. 비소비지출에서 송금과 보조 제외. 주거비의 귀속임대료를 포함한 이유는 도시가계조사의 주거비에 귀속임대료가 포함되지 않아 월세인 가계가 자가와 전세인 가계보다 오히려 주거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모순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이다.

<표 3> 노인부부가계의 월평균 표준생계비

지출비목	순수상대표준선		유사상대표준선I (평균값)		유사상대표준선II (중앙값)	
	원	%	원	%	원	%
소비지출						
식료품비	225,450	26.7	251,494	20.1	200,700	23.8
주거비	400,000	47.3	493,069	39.4	420,000	49.9
광열 수도비	36,870	4.4	60,408	4.8	37,340	4.4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8,000	0.9	22,746	1.8	7,500	0.9
피복 신발비	2,000	0.2	23,950	1.9	2,000	0.2
보건 의료비	23,300	2.8	83,916	6.7	26,900	3.2
교육비	0	0.0	345	0.03	0	0.0
교양 오락비	6,500	0.8	24,029	1.9	6,500	0.8
교통 통신비	35,360	4.2	74,645	6.0	33,460	4.0
기타소비지출	104,000	12.3	170,829	13.7	102,000	12.1
비소비지출	3,500	0.4	45,040	3.6	5,900	0.7
표준생계비1 (주거비 제외)	444,980	.	757,402	.	422,300	.
표준생계비2 (주거비 포함)	844,980	100.0	1,250,471	100.0	842,300	100.0

것은 주거비였으며, 그 다음으로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광열 수도비, 교통 통신비, 보건 의료비, 가구집기 가사용품, 교양 오락비, 비소비지출, 피복 신발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귀속임대료를 고려한 생계비의 개념이 희박한 우리 나라의 경우, 노인가계 지출비목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간과할 수가 있다. 따라서 노인의 경우 주거비를 포함하지 않으면 생계비를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1999년도 도시근로자 가계의 Engel계수, 즉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7.7인데, 여기의 Engel계수는 주택의 귀속임대료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다. 이에 노인가계의 경우에도 주거비를 제외하고 Engel계수를 살펴보면 50.7인 것으로 나타나, 식료품비가 전체 생계비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결국 노인가계의 경우 생계비의 대부분이 식생활유지를 위한 비용과 거주비용에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생계비의 조정 I : 생활수준에 따른 조정

자신의 가계가 처한 상황이나 원하는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계비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2가지의 표준생계비 측정방식을 최저생계비와 유락생계비에 적용하였다. 우선 순수상대표준선에 의한 각 생계수준별 생계비를 산정하였다(〈표 4〉 참조). 그 결과 최저생계비가 713,400원, 표준생계비가 844,980원, 유락생계비가 1,068,02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생계비를 100으로 할 때 최저생계비 84.4, 유락생계비 126.4에 해당하는 값이다.

각 비목의 차이를 생계비 수준별로 비교하면, 최저생계비와 유락생계비를 비교한 경우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보건 의료비와 기타소비지출이었으며,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의 경우 교통 통신비와 기타소비지출, 표준생계비와 유락생계비의 경우 보건 의료비와 기타소비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사상대표준선에 의한 표준생계비를 산정하였다(〈표 5〉 참조). 여기에서 가구원수 2인인 비노인가계의 생계비와 3~7인 가구원수의 생계비는 노인부부가계(2인)의 생계비 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였다. 그 결과 2인 노인가계의 최저생계비는 표준생계비의 1/2기준을 적용했을 때 421,150원, 2/3기준을 적용했을 때 561,533원이며, 유락생계비는 1,263,45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순수상대표준선에 의한 생계비 조정

(단위 : 원)

지출비목	생계비 수준	최저생계비 (A) N=167	표준생계비 (B) N=331	유락생계비 (C) N=167	$\frac{A}{B} \times 100$ (%)	$\frac{C}{B} \times 100$ (%)
소비지출						
식료품비		179,000	225,450	240,340	79.4	106.6
주거비*		360,000	400,000	500,000	90.0	125.0
광열 수도비		34,650	36,870	51,400	94.0	139.4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6,700	8,000	10,000	83.8	125.0
피복 신발비		0	2,000	5,000	0.0	250.0
보건 의료비		24,000	23,300	41,200	103.0	176.8
교육비		0	0	0	.	.
교양 오락비		6,300	6,500	8,500	96.9	130.8
교통 통신비		26,350	35,360	44,580	74.5	126.1
기타소비지출		73,400	104,000	162,000	70.6	155.8
비소비지출		3,000	3,500	5,000	85.7	142.9
생계비계 (주거비제외)		353,400	444,980	568,020	79.4	127.7
생계비계 (주거비포함)		713,400	844,980	1,068,020	84.4	126.4

\* 최저생계비는 전세의 귀속임대료를, 표준 및 유락생계비는 자가의 귀속임대료 적용



〈표 5〉 유사상대표준선에 의한 생계비 조정

(단위 : 원)

가구원수	N	최저생계비I ( $\frac{1}{2}$ 기준)	최저생계비II ( $\frac{2}{3}$ 기준)	표준생계비	유락생계비
1인 노 인*	.	254,375	339,166	508,749	763,124
비노인*	.	312,957	417,275	625,913	938,870
2인 노 인	1,649	421,150	561,533	842,300	1,263,450
비노인	10,245	518,140	690,853	1,036,280	1,554,420
3인 전체가계	16,095	653,739	871,651	1,307,477	1,961,216
4인 전체가계	24,617	802,940	1,070,587	1,605,880	2,408,820
5인 전체가계	7,240	887,131	1,182,841	1,774,261	2,661,392
6인 전체가계	1,994	1,003,768	1,338,357	2,007,535	3,011,302
7인 전체가계	727	998,709	1,331,611	1,997,417	2,996,126

\* 도시가계조사는 1인가계를 조사하지 않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이 제시하는 2인가계 대비 1인가계의 가계균등화 지수인 0.60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표 6〉 선행 연구의 가계균등화지수 비교

가구원 수	본 연구	Hefferan(1984)	한국보건사회 연구원(1999)
1인 노 인	0.317*	0.50	0.270**
비노인	0.390*	0.54	0.349
2인 노 인	0.525	0.61	0.446**
비노인	0.645	0.67	0.578
3인 전체가계	0.814	0.80	0.795
4인 전체가계	1.000	1.00	1.000
5인 전체가계	1.105	1.20	1.137
6인 전체가계	1.250	1.39	1.283
7인 전체가계	1.244	1.57	.

\* 1인 노인=2인 노인×0.604 ; 1인 비노인=2인 비노인×0.604

0.604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p. 242)이 산정한 2인가계 대비 1인가계의 가계균등화지수이다.

\*\* 2인 노인=2인 비노인×0.7723 ; 2인 노인=2인 비노인×0.7723

0.7723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p. 292)이 산정한 표준성인(40~50세)을 1로 할 때 65세 이상인 집단의 가계균등화 지수이다.

이는 순수상대표준선을 기준으로 한 생계비와는 차이가 났는데, 유사상대표준선으로 조정된 최저생계비는  $\frac{1}{2}$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순수상대표준선으로 조정된 최저생계비보다 292,250원이 적었고,  $\frac{2}{3}$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151,867원이 적었다. 유락생계비의 경우 195,430원이 많이 나타났다. 즉 순수상대표준선에 의한 생계비보다 최저생계비는 더 적게, 유락생계비는 더 많이 계산되었다. 여기에서 산정된 가구

인원수별 표준생계비를 중심으로 가계균등화지수를 산정했는데, 이를 다른 연구와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 3. 생계비의 조정 II : 건강상태, 취업상태에 따른 조정

도시가계연보에서는 응답가계의 건강에 대한 정

보를 조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 의료비를 통해 건강상태가 생계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보건 의료비 지출이 전혀 없는 집단을 건강하다고 가정하고, 보건 의료비 지출이 소비지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집단을 건강하지 못하다고 가정하여 생계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산정된 두 가지 방식의 표준생계비 중 표본수 확보를 위해 유사상대표준선에 의한 표준생계비만을 대상

〈표 7〉 건강상태에 따른 표준생계비의 차이

전체가계 N=1,649, 건강 좋음 N=299, 건강 좋지 않음 N=278

지출비목	집단구분	전체가계		건강이 좋은 가계 (A)		건강이 좋지 않은 가계 (B)		$\frac{B}{A} \times 100$ (%)
		원	%	원	%	원	%	
소비지출								
식료품비		200,700	23.8	211,200	26.8	162,528	19.2	77.0
주거비		420,000	49.9	400,000	50.8	341,000	40.4	85.3
광열 수도비		37,340	4.4	35,353	4.5	31,163	3.7	88.1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7,500	0.9	5,000	0.6	5,130	0.6	102.6
피복 신발비		2,000	0.2	0	0.0	0	0.0	.
보건 의료비		26,900	3.2	0	0.0	199,830	23.7	∞
교육비		0	0.0	0	0.0	0	0.0	.
교양 오락비		6,500	0.8	6,500	0.8	5,500	0.7	84.6
교통 통신비		33,460	4.0	32,090	4.1	32,200	3.8	100.3
기타소비지출		102,000	12.1	91,600	11.9	61,550	7.3	67.2
비소비지출		5,900	0.7	5,620	0.7	5,000	0.6	89.0
표준생계비1(주거비제외)		422,300	.	387,363	.	502,901	.	129.8
표준생계비2(주거비포함)		842,300	100.0	787,363	100.0	843,901	100.0	107.2

\* 유사상대표준선에 의한 표준생계비와 순수상대표준선에 의한 표준생계비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므로 그중 유사상대표준선에 의한 표준생계비로 사용한다.

〈표 8〉 취업상태에 따른 표준생계비의 차이

비취업자가계 N=1,298, 취업자가계 N=351

지출비목	집단구분	전체가계		비취업자가계 (A)		취업자가계 (B)		$\frac{B}{A} \times 100$ (%)
		원	%	원	%	원	%	
소비지출								
식료품비		200,700	23.8	188,260	23.9	286,054	28.1	151.9
주거비		420,000	49.9	390,000	49.6	450,000	44.2	115.4
광열 수도비		37,340	4.4	35,160	4.5	44,935	4.4	127.8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7,500	0.9	7,500	1.0	7,860	0.8	104.8
피복 신발비		2,000	0.2	2,000	0.3	2,000	0.2	100.0
보건 의료비		26,900	3.2	29,300	3.7	21,000	2.1	71.7
교육비		0	0.0	0	0.0	0	0.0	.
교양 오락비		6,500	0.8	6,500	0.8	7,500	0.7	115.4
교통 통신비		33,460	4.0	31,600	4.0	46,000	4.5	145.6
기타소비지출		102,000	12.1	95,400	12.1	128,450	12.6	134.6
비소비지출		5,900	0.7	900	0.1	25,312	2.5	281.2
표준생계비1(주거비제외)		422,300	.	396,620	.	569,111	.	143.5
표준생계비2(주거비포함)		842,300	100.0	786,620	100.0	1,019,111	100.1	129.6

으로 하였다.

〈표 7〉에 의하면 건강이 좋은 집단의 경우 표준생계비는 787,363원이었으며, 건강이 좋지 못한 집단의 경우 843,901원으로 나타나, 건강이 좋지 못한 집단의 생계비가 약 5만 7천원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만원 가량 추가 의료비 지출로 인한 생계비 증가에 기인한다.

다음으로 퇴직이 생계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많은 노인가계의 경우 퇴직자가계로 여러 이유로 인한 필요생계비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계별로 퇴직하기 전과 퇴직한 후의 생계비를 비교하여 필요생계비가 감소했는지를 판단하는 종단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자가계의 생계비 감소에 대해 보고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략적인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취업자 집단과 비취업자 집단의 비교를 통해 취업상태가 생계비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취업자가계 1,019,111원, 비취업자가계 786,620원으로 취업자가계가 약 23만원 가량 더 많았다(〈표 8〉 참조). 즉 취업자의 생계비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비취업자의 129.6%로 나타나 약 30% 가량 추가생계비가 필요했다. 이는 양세정(2000)의 연구에서 취업자가 비취업자에 비해 높은 소비지출을 나타낸다는 것과 일치한다.

## V. 결론 및 제언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65세 이상인 노인 부부가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한달에 84만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한의 생계수준으로 준비할 경우 한달에 56~71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유락생계수준을 원할 경우 한달에 약 107~126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표준생계비를 100으로 할 경우 최저생계비는 68~84% 수준이며, 유락생계비는

126~150%의 수준이었다. 유사상대표준선에 의한 생계비를 가구원수별로 살펴보면 4인가족의 표준생계비를 1로 볼 때 노인부부가계의 경우 0.525, 2인가계 비노인가계의 경우 0.645로 노인부부가계가 비노인 부부가계보다 필요생계비가 81~83%에 해당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에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에 비해 57,000원 가량의 추가 생계비가 필요하게 되고, 직업을 계속해서 가질 경우 비취업자보다 232,000원 가량 더 많은 생계비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자신이 처한 가족의 상황에 따라 생계비를 달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노인부부가계의 경우 비노인가계에 비해 절대적인 생계비 액수도 적지만 비목별 생계비 필요액도 분명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노인부부가계의 경우 전체 생계비와 대부분의 비목별 생계비는 비노인 2인가계에 비해 낮게 나타났지만 주거비의 경우 적게는 1.13배에서 많게는 2.76배까지 많았으며, 보건 의료비의 경우 적게는 1.46배, 많게는 2.56배까지 많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피복 신발비, 교육비, 교양 오락비, 비소비지출의 경우 비노인가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생계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최저생활, 표준생활, 유락생활 등 전체 생활수준 모두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이는 노인들의 경우 주거비와 보건 의료비에 비노인가계와는 다른 욕구를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 의료비에 대한 지출의 경우 노인이라는 뜻 자체에 내포되어 있듯이 인생후반부에 몸이 노화되어 각종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들에게는 건강과 관련된 지출에 높은 욕구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거비의 경우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생애주기 초반에 집중되어 있어 가정을 형성한 후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중년기에 이르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집을 마련하게 되며, 자녀들의 교육비와 결혼자금을 위해 많은 비용을 저축하고 또 지출하게 된다. 그래서 노년기에 이르면 집은 소유하고 있으나, 은퇴로 인해 더 이상의 추가소득을 얻을 원천은 상실

하게 되고 만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나라만 처한 상황은 아니지만 자식의 교육비와 결혼자금의 상당 부분을 부모가 담당할 정도로 자녀들이 의존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노후 대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역저당 제도이다. 역저당 제도(reverse mortgage)란 노인의 경우 집을 있으나 현금소득이 부족하다는 특성을 고려한 주택등가전환(home equity conversion)의 일종이다. 즉 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주택을 담보로 역저당기관으로부터 매달 약정된 금액(spendable cash)을 지급받는 제도로, 주택자산가치만큼 현금화하여 이를 소득원천으로 삼는 것이다. 이는 노인의 인구비율이 많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Schwenk, 1994; 임경수·조덕호, 1999).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문제시 되는 점을 보완한다면 노인가계의 소득원천으로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가의 노인부양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감소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자금을 일시에 차입하여 점차 상환해나가는 저당제도와는 달리 자신의 주택 자산의 가치만큼 현금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주택으로 인한 자산은 감소하는 것이다. 주택보유로 인한 주거비가 표준생계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주거비용만큼을 현금소득화할 수 있다면 노인부부 생계비의 상당부분을 보충하는 효과와 함께 추가소득으로 인해 궁극적인 노후 생활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비목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요구상태를 보였다. 피복 및 신발은 인생의 초반부에 구입한 것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선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 비소비지출의 경우 직장에 다닐 경우 지출하게 되는 각종 조세나 미래 대비를 위한 각종 연금이 지출되지 않으므로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비 및 교양 오락비의 지출이 매우 낮은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들의 욕구가 없다가보다는 아직 이를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유락생계 수준에 있는 집

단도 교양 오락비의 지출이 월 5,000원에 불과한 것을 보면 아직 노인이 즐길만한 오락이나 문화가 충분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건강상태가 생계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건강이 좋은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의 생계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건강이 좋은 가계의 표준생계비는 787,363원이었으며, 건강이 좋지 못한 가계의 경우 843,601원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가계의 생계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의 질은 건강이 좋은 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액수로 볼 때 보건 의료비와 가구집기 가 사용품비, 교통 통신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비목에서 건강이 좋은 가계가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이 좋지 못한 가계는 의료비에 상당부분을 지출하고 대신 다른 비목에 대한 지출을 상대적으로 줄이게 됨을 알 수 있다.

넷째, 기업이 고령근로자의 임금 산정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위해 노인부부가계중 취업자를 중심으로 표준생계비와 최저생계비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표준생계비는 1,019,111원이며, 최저생계비는 유사상대표준선을 적용할 경우 662,533원과 순수상대표준선을 적용할 경우 838,76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취업노인가계에 비해 30% 가량의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노인가계보다는 낮게 나타나 기업으로서는 적정임금지급을 통해 고용부담을 줄이고, 고령근로자는 자기에게 적절한 수준의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경우 생계비 측정방식 중 통계해석 방식을 사용해 생계비를 산정하였다. 통계해석 방식은 여타 방법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게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가계의 생계비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태생계비이므로 실제 생활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왜곡을 그대로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노년기가 되었을 때 그 이전 생애주기보다 생계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생계비가 낮게 산출되는건지 아니면 절대적 소득이

적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는건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생계비를 산정해 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기에는 전물량 방식으로 생계비를 측정하다가 안정적으로 산정이 되면 통계해석 방식을 활용하므로, 무엇보다 전물량 방식의 생계비 측정이 필요하다.

또한 물론 어느 나라든 초기 생계비 계측은 물량 방식을 사용하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계측된 후에 다른 방식의 도입을 시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량 방식에 의한 노후 생계비 계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물량 방식에 의한 생계비측정에 개입되어 왔던 주관성의 극복은 개별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지기에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노인가계의 생계비는 그 가계가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여겨 건강상태와 취업상태에 따른 생계비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도시가계조사에서 건강상태나 퇴직전후의 지출 변화 등에 대한 종단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가계별 생계비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노후 생계비는 1인 단독가계의 생계비도 산정되어야 한다. 특히 여자노인의 경우 배우자 없이 홀로 생활을 꾸려가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상황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1인가계의 경우 빈곤한 성향이 강해 2인가계와는 다른 사회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도시가계조사 자료에서도 1인가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1인가계의 생계비 추정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산정한 가계균등화지수를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가계균등화지수가 노인가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국토개발연구원(1990). 도시빈곤층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 국토개발연구원.
- 김경자(1997). 도시가계 생계비 산정기준의 다양화를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37-148.
- 김경자(2000). 라이덴 방식에 의한 주관적 생계비와 그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43-52.
- 김미곤(1997). 최저생계비 계측현황과 정책과제. 보건의포럼, 97, 10월, 72-81.
- 류정순(1996). 한국 도시가계의 빈곤선 재정립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박태규(1991). 한국의 최저생계비 추계에 관한 연구-라이덴 방식을 중심으로-. 재정논집, 5, 297-313.
- 서상목(1979). 우리 나라 빈곤의 결정요인. 한국개발연구, 1, 4, 46-58.
- 안병근(1992). 한국의 도시부문 최저생계비 추정. 경북대학교 경제논집, 20(1), 89-113.
- 양제정(2000). 노인가계의 경제수지 분석- 노인생활의 현황과 과제. 가톨릭대생활과학연구소 가을 심포지움. 25-34.
- 윤석범(1983). 성장, 체제, 빈곤의 경제론. 서울: 학민사.
- 이두호, 최일섭, 김태성, 나성린(1991). 빈곤론. 서울: 나남출판사.
- 이보경(1992). 우리 나라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이선형, 이연숙(1998). 노인생활실태에 따른 생활서비스 요구. 고려대 사대논집, 22, 127-156.
- 이중희(1987). 홍기용편. 도시빈곤의 실태와 정책.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 임경수, 조덕호(1999). 역저당 제도와 노인복지모형 개발. 지역사회개발연구, 24(1), 65-85.
- 장원창(1989). 한국도시지역의 최저생계비추정모형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장현준(1986). 최저생계비산출모형과 도시부문 생계비계측 결과. 사회보장연구, 2, 97-146.
- 장현준(1987). 한국도시부문의 표준생계비.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조성자(1991). 도시근로자의 통상적 생계비에 관한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 한국노동연구원(1996).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89). 도시근로자 생계비 조사. 서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96). 도시근로자 생계비 조사. 서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98). 도시근로자 생계비 조사. 서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a).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b). 최저생계비 계측모형개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9).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연구.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허 선(1992). 한국 빈곤선 측정의 동향과 과제.
- 황재한(1997). 최저생계비 추계방법 및 계측에 관한 연구. 경기대 박사학위 논문.
- 楠田 丘(구스타 오카)(1987). 생계비와 임금. 일본 산업노동조사소. 한국공업표준협회 역.
- Crown, W. H., Longino, C. F. & Cutler, N. E. (1993), Net Worth and Economic Diversity of the Elderly, *J. of Aging and Social Policy*, 5(4), 99-118.
- Hefferan, C. (1987), Family Budget Guidelines. *Family Economics Review*, 4, 1-9.
- Hitschler, P. B. (1993), Spending by Older Consumers 1980 and 1990 Compared. *Monthly Labor Review*, 116(5), 3-13.
- Monroe (1974), Pre-Engel Studies and the Work of Engel : The Origins of Consumption Research.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3(1), 43-64.
- Radner, D. B. (1995), Incomes of the Elderly and Non-elderly, 1962~1992. *Social Security Bulletin*, 58(4), 82-97.
- Schwenk (1994), Trends in the Economic Status of Retired People. *Family Economics Review*, 7(2), 19-27.